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양진오 의원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진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6. . .
발 의 자 : 양진오 의원(1인)
찬 성 자 : 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
김재우·김춘남·소진혁·정지원
의원(8인)

1. 제안이유

구미시 먹거리 선순환 체계확립을 위한 농민들의 로컬푸드 인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GAP 인증과 동일 수준의 검사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농민들의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오탈자 수정(안 제21조제2항)
- 나. 로컬푸드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안 제21조제3항)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
 -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나. 부서검토: 농식품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로컬푸드”를 “로컬푸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로컬푸드 인증절차에서 필요한 분석 및 심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로컬푸드 인증) ① (생략)</p> <p>② 시장은 <u>로컬푸드</u>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u><신 설></u></p> <p>③ (생략)</p>	<p>제21조(로컬푸드 인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로컬푸드</u> ----- ----- ----- -----.</p> <p>③ <u>시장은 로컬푸드 인증절차에서 필요한 분석 및 심사 등을 직접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운영한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생략)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 더. (생략)

5. ~ 7. (생략)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농식품산업과

조 례 명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제13조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컬푸드 인증 절차에 필요한 분석 및 심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수행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안 제21조제3항)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컬푸드 인증 절차에 필요한 안전성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분산된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기업급식 등 관계시장 확대에 필요한 안전성 관리의 일원화에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향후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충, 분석장비 확보, 인증·분석비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후속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 로컬푸드 신뢰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농가소득 증대○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21조(로컬푸드 인증) 제3항
 - 로컬푸드 인증절차에 필요한 분석 및 심사 등의 직접 수행기관으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 운영
 - 향후 안전성 검사 확대·운영 과정에서 검사 장비 및 인력 확충 등 추가 예산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제21조제3항은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를 로컬푸드 인증 업무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해당 규정만으로는 직접적인 재정지출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 또한, 로컬푸드 인증 절차에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비는 향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에서 산출될 예정이며, 예산의 소요는 예상되나 현 단계에서 재정 발생 규모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 농식품산업과 먹거리정책팀 정미애(☎480-5923)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기술개발과

조 례 명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제13조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컬푸드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 (안 제21조제3항)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미시농업기술센터는 GAP 및 친환경인증의 농산물잔류농약 분석 시설 및 제도를 갖추고 지원하고 있음○ 로컬푸드 인증제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잔류농약 분석은 3,000건 이상, 농업용수 및 중금속 분석이 1,500건 이상 추가되어 전체 분석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분석 수요 증가 및 항목 고도화에 따른 연차별 재원과 전문인력의 적기 확충이 필요하며 신규 장비 수용을 위한 시설 증설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장비 도입과 설치 간의 시차를 최소화해야 함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 농업인의 인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구미시 생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혀 다양한 판로 확보 기대○ 소요예산: 2,243백만원(2027년 ~ 2031년 비용추계)○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로컬푸드 인증 수행에 따른 잔류농약, 농업용수, 중금속분석이 증가함에 따라 분석 재료 및 장비 유지를 위한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이 2027년 상반기 예정이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로컬푸드 인증제를 운영할 경우 2027년 140,000천원을 포함하여 2031년까지 총 2,243,28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분석 및 심사 전문인력 3명(연구사 2, 지도사 1)과 장비 수용을 위한 시설 신축 및 증설 비용 제외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계
세출	140,000	1,644,200	148,526	152,983	157,571	2,243,280

☞ 1차년도 : 12개월분 비용 / 1차년도 이후 계속비 매년 인상률 3%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계
국 비						
도 비		750,000				750,000
시 비	140,000	894,200	148,526	152,983	157,571	1,493,280
민 간						
기 타						
합 계	140,000	1,644,200	148,526	152,983	157,571	2,243,280

5. 부대의견

- 인증 심사를 진행하는 부서 또는 재단은 인증 관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6. 작성자

- 기술개발과 농업환경분석팀 지방농업연구소 송태복(☎480-428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1차년도(2027년)

구 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합 계	140,000	
재 료 비	90,000	○ 농산물안전분석 재료 구입 : 60,000 ○ 분석기기 소모품 구입 : 30,000
일반관리비	50,000	○ 분석장비 유지보수 : 30,000 ○ 분석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 : 20,000

2. 2차년도(2028년)

구 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합 계	1,644,200	
자산취득비	1,500,000	○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1대(추가) : 300,000 ○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1대(추가) : 600,000 ○ 유도결합분광광도질량분석기 1대 : 400,000 ○ 수은분석기 1대 등 : 200,000
재 료 비	92,700	○ 농산물안전분석 재료 구입 : 61,800 ○ 분석기기 소모품 구입 : 30,900
일반관리비	51,500	○ 분석장비 유지보수 : 30,900 ○ 분석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 : 20,600

3. 3차년도(2029년)

구 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합 계	148,526	
재 료 비	95,481	○ 농산물안전분석 재료 구입 : 63,654 ○ 분석기기 소모품 구입 : 31,827
일반관리비	53,045	○ 분석장비 유지보수 : 31,827 ○ 분석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 : 21,218

4. 4차년도(2030년)

구 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합 계	152,983	
재 료 비	98,346	○ 농산물안전분석 재료 구입 : 65,564 ○ 분석기기 소모품 구입 : 32,782
일반관리비	54,637	○ 분석장비 유지보수 : 32,782 ○ 분석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 : 21,855

5. 5차년도(2031년)

구 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합 계	157,571	
재 료 비	101,296	○ 농산물안전분석 재료 구입 : 67,531 ○ 분석기기 소모품 구입 : 33,765
일반관리비	56,275	○ 분석장비 유지보수 : 33,765 ○ 분석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 : 22,510